

의안번호	제 273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344 회)

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11월 4일

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7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1월 4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투자진흥기금의 산업단지 임대수입 17백만원 및 이자수입 36백만원 등이 발생되어 그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을 2,398백만원으로 증액하고, 청소년육성기금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도비(100백만원)를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함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에 따라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(청소년육성기금, 투자진흥기금)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14년도말 조성액	2015년도 운용계획				2015년도말 조성액
		당초		변경		
		수입	지출	수입	지출	
투자진흥기금	2,343	0.28	0	54	0	2,398
청소년 육성기금	878	13	13	113	13	979

3. 의안전문 : 첨부(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)

4. 관계법령 발체 : 불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-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